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



[청주지방법원 2008. 5. 1. 2007고합182-1(분리), 196, 215, 217, 231, 2008고합25, 26(각병합)]

[전문]

【피고인】 피고인 1외 20인

【검 사】 최용현

【변호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 변호사 김찬학외 8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6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20, 피고인 21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25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205일을 피고인 3에 대한, 183일을 피고인 4에 대한, 178일씩을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에 대한, 91일씩을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1에 대한, 87일을 피고인 19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3, 피고인 17, 피고인 19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3, 피고인 17, 피고인 19에게 각 200시간씩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이유]

1

[이유]

1

[이유]

1

))

[이유]

]

[이유]

]

[이유]

]